

건-규동의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05	21	1. 11. 9	홍재 김준성

의안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 일부개정

의결사항 1. 한국은행의 여신업무이율을 별안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 심시일자 : 01. 11. 9

3. 경과조치 : 별안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2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금융기관 여신금리 인하를 유도코자 관련 전기와 같이 외금압착을 제외함.

참고사항 1.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 72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9조 예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② 1. 1969년 12월 26일 제69호 관공서 훈포장
사 1969년 12월 26일 제69호 훈포장 훈장 수여

2. 훈장

가. 훈장 수여 대상자 명단

(1) 훈장 수여 대상자 명단

나. 훈장 수여 대상자 명단

다. 훈장 수여 대상자 명단

라. 훈장 수여 대상자 명단 (안)

"한국의 민영 기업부흥" 임우계획 (안)

구	내	영	계
구	내	영	계
계합인	상업기업	전국업체 연합회 (양도대서 및 인수포함) 또한 수취비용 : 연 15.5% 기타비용 : 연 16.0%	국립업체 연합회 (양도대서 및 인수포함) 또한 수취비용 : 연 14.5% 기타비용 : 연 15.0%
	수출기업	1) 용자기간 135일 이내분 : 연 16.0%	(연평균 합계)
민	과학기술기업	2) "수출진흥구역" 제2조 및 "외국표시권규칙" 제4조 에 의한 20일초과 용자기간 해당업체의 양액영수분 소실용자기간 이내분 : 연 16.0%	(연평균 합계)
	보	3)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기업공사로서 용자기간 135일 초과 1년이내분 및 산부표준 양도 차액으로서 용자기간 135일 초과 770일 이내분 : 연 16.0%	
민	보	4) 전 2), 3) 항 이외의 용자기간 135일 초과분 : 연 16.0%	1)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기업공사로서 용자기간 135일 초과 1년 이내분 및 산부표준 양도 차액으로서 용자 기간 135일 초과 270일 이내분 : 연 15.0%
	민	5) 특용수출 또는 공판품 이외분 : 연 22.0%	2) 전 2), 3) 항 이외의 용자기간 135일 초과분 : 연 15.0%
민	민	이차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함수 있다.	3) 특용수출 또는 공판품 이외분 : 연 21.0%
	민	이차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함수 있다.	이차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함수 있다.
민	민	구입 제2조 제2항 "가"호 적용비용 : 연 16.0%	(연평균 합계)
	민	구입 제2조 제2항 "나"호 적용비용 : 연 16.0%	다만 특용수출 신용장 수첨 품 이외분 및 특약은 연 21.0%
민	민	다만 특용수출 신용장 수첨 품 이외분 및 특약은 연 22.0%	이차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함수 있다.
	민	이차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함수 있다.	있다.

